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6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태년 · 진성준 · 박용갑
김영환 · 홍기원 · 박홍배
박희승 · 박민규 · 윤종균
정준호 · 이광희 · 이주희
박지혜 · 송재봉 · 김한규
박해철 · 이재강 · 서영석
이재관 · 정태호 · 김병주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전단 중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을 “경우 또는 위탁 받은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방식 등) ① ~ ④ (생략)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방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u>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u>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 ----- ----- <u>경우 또는</u> <u>위탁받은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u>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